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은 강등 및 정직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을 말한다.

1. 징계처분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또는 정직
2. 비위사실 등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목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너.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u> <u>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u> <u>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u> <u>또는 비위사실 등을 말한다.</u> 1. <u>징계처분 : 「국가공무원법」</u> <u>제79조에 따른 강등 또는 정</u> <u>직</u> 2. <u>비위사실 등 : 「국가공무원</u> <u>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처분</u> <u>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가. <u>「국가공무원법」 제78조</u> <u>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비위</u> 나. <u>「국가공무원법」 제78조</u> <u>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u> <u>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u> <u>않은 행위</u> 다.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u>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
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
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
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
정(이하 이 목에서 “소극
행정”이라 한다)

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
극행정은 제외한다)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
위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

⑤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u>원 행동강령」 제13조의3</u> <u>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u> <u>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u> <u>하지 않은 경우</u> <u>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u> <u>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u> <u>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u> <u>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u> <u>한 경우</u> <u>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u> <u>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u> <u>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u> <u>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u> <u>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u> <u>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u> <u>따른 직무수행</u> <u>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u> <u>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u> <u>너.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u> <u>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u> <u>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u> <u>등의 부당행위</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 ----- -----
--	--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
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
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551